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용

1. 대상 투자신탁: 삼성달러표시미국S&P500인덱스증권투자신탁(USD)[주식]

2. 정정 사유: 투자신탁 명칭 변경(삼성달러표시미국인덱스증권투자신탁(USD)[주식] → 삼성달러표시미국S&P500인덱스증권투자신탁(USD)[주식]), 환매주기 단축,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3. 정정 신청일 [효력발생일(예정)]: 2026.11.13 [2026.11.20]

4. 정정 요구 · 명령 관련 여부: 아니오

5. 정정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달러표시미국인덱스증권투자신탁(USD)[주식]을** 말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달러표시미국S&P500인덱스증권투자신탁(USD)[주식]'를** 말한다.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 신탁계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7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센트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①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센트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센트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19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20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3조(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3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4조(투자대상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및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발행한** 것(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으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6조(운용 제한)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3. 〈신설〉	나. 지방채증권, **파생결합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 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② 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 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1호 **내지 제1 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 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 제5호,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4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4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②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 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 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6조(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8조(투자신탁의 합병)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9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설〉 나. 〈신설〉 다. 〈신설〉 라. 〈신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투자신탁 명칭 변경(삼성달러표시미국인덱스증권투자신탁(USD)[주식] → 삼성달러표시미국S&P500인덱스증권투자신탁(USD)[주식]), 환매주기 단축,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